

경비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에 관한 연구

김민수* · 김종민**

요 약

지식정보사회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차별화된 전문직업인을 요구하지만,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들의 직무수행능력은 산업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경비분야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for Security

Min Su Kim* · JongMin Kim**

ABSTRACT

Expenses in the form of personnel expenses in the past, in modern times, machine guards to gradually transition has been. This is because the machine guard is more efficient than personnel expenses. But due to false alarms, despite the high expectations of the effects of electronic security in the oper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y system due to factors that hinder the development of machine guards growth slows.

Defect removal aspects of this paper, using 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techniques to study the operation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s and its importance in the development of machine guards, look at how high the technical aspects of electronic security systems composite type of malfunction to minimize crime sensor are presented.

Key words : NCS, DACUM, 직무분석, 경비,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접수일(2015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2015년 2월 24일)

*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신저자)

**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1. 서 론

지식정보사회의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차별화된 전문직업인으로, 이는 융·복합 산업시대의 인적자원개발 요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교육기관이나 직업교육기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측면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의 직무수행능력은 산업현장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재교육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재투자하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인력양성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요자 측면에서, 기대하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를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에서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을 도입·개발하였고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자격기본법 법률 11722호 제2조 2항에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1]하고 일·교육, 훈련·자격 간 미스매치 해결 및 스펙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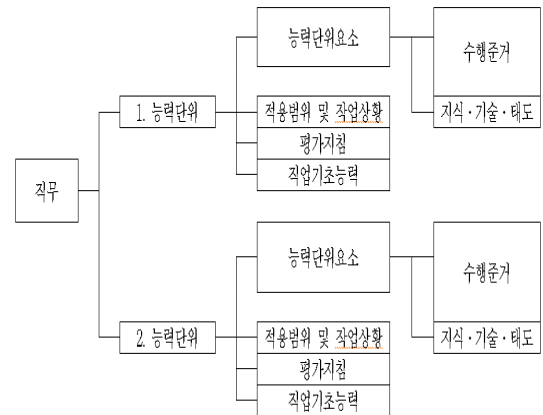
이와 같은 국가 정책방향으로 2014년 6월 20일 기준으로 대분류 24개, 중분류 77개, 소분류 227개, 세분류 857개로 분류하고 신규 및 보완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비분야도 다른 직무와 같이 현장 중심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경비와 신변보호로 2개의 세분류로 분류하고 있다. 세분류의 분류 기준은 경비업법 제2조 1항의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업무를 통합한 경비와 신변보호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세분류 중에서 경비분야에 대하여 산업현장·교육훈련·자격 전문가의 의견을 통한 직무분석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기법을 활용하여 경비원 교육의 현장적합성을 제고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2. 관련 연구

2.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비분야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에서 직무는 분류체계의 세분류를 의미하며, 원칙상 세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요소는 해당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전체 직업능력을 구성하는 개별적 직업능력인 능력단위(competency unit)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평가지침, 직업기초능력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3]. (그림 1)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NCS의 구성[3]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NCS 구성의 세부사항[3]

구 성 항 목	내 용
능력단위	· 능력단위의 목적, 업무수행 및 활용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
능력단위요소	· 능력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 하위능력을 기술
수행준거	· 능력단위요소별로 성취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
지식·기술·태도	·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적용범위 및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데 있어 관련

작업상황	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 능력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평가지침	· 능력단위의 성취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직업기초능력	· 능력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

2014년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비분야는 <표 2>와 같이 대분류는 청소분야와 함께 분류되었고, 세분류는 경비와 경호로 분류체계를 구분하였다.

<표 2> NCS 경비분야 분류체계[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1. 경비·청소	1. 경비	2. 경비·경호	01. 경비
			02. 경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분류체계와는 조금 상이한 한국산업분류에서는 <표 3>과 같이 보안시스템 서비스업과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을 경비분야로 함께 분류하였다.

<표 3> 한국산업분류 경비분야 분류체계[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N.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33.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위해서는 직무분석(Job Analysis)이 선행되어야 한다. 직무분석은 각 직무를 구성하고 있는 일의 전체 즉,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숙련, 태도, 책임과 그 지수가 타 직무와 구별되는 요인을 명확하게 밝혀서 기술하는 수단으로 분석대상 직업에 따라 직

무분석 방법이 다양하다[6]. 여러 가지 직무분석 방법 중 DACUM(Developing A Curriculum) 기법은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교육과정에 필요한 책무(duty), 기술(skills), 태도(behavior) 및 미래 동향(trend) 등을 분석하는데 있다[7][8][9][10].

DACUM 기법의 장점은 첫째, 실제업무와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둘째, 경과와 적용이 용이하다는 것, 그리고 셋째는 짧은 시간 안에 행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는 비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이다[11].

2.2 경비·경호 분야 교육훈련 현황

민간경비와 관련된 교육기관은 경비업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경찰청에서 지정한 법정교육기관(교육기관 지정 유효기간 : 2011. 1. 1 ~ 2015. 12. 31, 5년간)에서 일반 및 특수 경비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대학의 경호 관련 학과에서 경비·경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호관련 학과는 경찰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경호(보안)학과, 경호비서학과, 경찰행정경호학과, 경호무도학과, 경호무술학과, 스포츠경호비서학과, 국제 무도 경호학과, 경찰경호합기도학과, 스포츠경호학과, 경호스포츠학과 등으로 파악되며, 경호학과로 분류하였다. <표 4>는 경비·경호 관련 교육훈련기관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4> 경비·경호 관련 교육훈련기관 현황

중분류	소분류	교육훈련기관		비 고
		구 분	계	
경비·경호	경호	대학	70	경찰계열 학과 포함
		전문대학	35	
		특수경비신입교육기관	8	유효기간 2015.12.31
		일반경비신입교육기관	45	

민간경비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과목은 일반경비원 신입교육과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으로 구분되며 <표 5>는 특수·일반경비원 신입교육 교과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구 분		과 목	시 간	
특수 경비	이론 교육	경비업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8	
		헌법 및 형사법	4	
		범죄예방론	3	
일반 경비	실무 교육	정신교육	2	
		테러 대응요령	4	
		폭발물 처리요령	6	
		화재대처법	3	
		응급처치법	3	
		분사기 사용법	3	
		출입통제 요령	3	
		예절교육	2	
		기계경비 실무	3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시설경비요령	4	
		민방공	6	
		총기조작	3	
		총검술	5	
		사격	8	
		체포·호신술	5	
		관찰·기록기법	3	
		기타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4
		계		88
		일반 경비	이론 교육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2			
실무 교육	시설경비실무		2	
	호송경비실무		2	
	신변보호실무		2	
	기계경비실무		2	
	사고예방대책		3	
	체포·호신술		3	
	장비사용법		2	
직업윤리 및 서비스	3			
기타	입교식, 평가 및 수료식	1		
계		24		

또한 각 대학의 경호 관련 학과의 교육교과목은 <표 6>과 같이 관련법령, 경호·경비 실무, 경찰학, 무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 6> 경비경호 관련학과 교과목 현황

중분류	소분류	학과	교육과목	
경비경호	경호	경찰 / 경호학과	관련법령	형법총론
				형법각론
				경비업법
				형사소송법
				법학개론
			경비경호 실무	경호학
				경호실무
				민간경비론
				경호의전
				경호비서학
				기계경비론
				경호방법론
				탐정학
			경찰학	경찰학개론
				범죄학개론
				범죄심리학
				범죄예방론
				대테러정책
			무도	비교경찰론
				경호무도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경비분야에 대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 S) 개발로서, 개발 착수를 위해서 연구진, 개발진의 구성과 연구 범위를 정하게 된다. <표 7>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구성 인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연구진 및 개발진 구성 현황

구 분		구 성	인원
개발진	산업현장 전문가(7)	시설경비	3
		기계경비	2
		호송경비	1
		특수경비	1
	교육훈련 전문가(3)	대학	1
		전문대학	2
		자격 전문가(1)	자격
직무분석 전문가(1)	교육공학	1	
연구진	프로젝트 전문가(2)	대학	2

이와 같이 구성된 연구진과 개발진은 6번의 워크숍과 3번의 검토회의를 거쳐 직무의 정의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성의 세부사항을 (그림 2) 개발 절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여 개발하게 된다. 연구의 범위는 (그림 2)의 능력단위별 K·S·A 까지 개발하였으며, 또한 경비분야의 경우 시설경비, 기계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를 통합하여 개발하여야 하므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는 시설경비를 중심으로 표준 개발하고 나머지 기계경비에 대한 표준 개발하게 된다.

여기서 시설경비를 중심으로 호송경비, 특수경비를 개발하는 이유는 두 경비업무의 실무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호송경비의 경우 차량 이동 중에 보안 위협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차 후 업무 수행 중에 보안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차량과 시설을 경비해야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시설경비의 성격을 띠게 된다. 특수경비의 경우도 특수 시설이라는 차이점 이외에는 시설경비업무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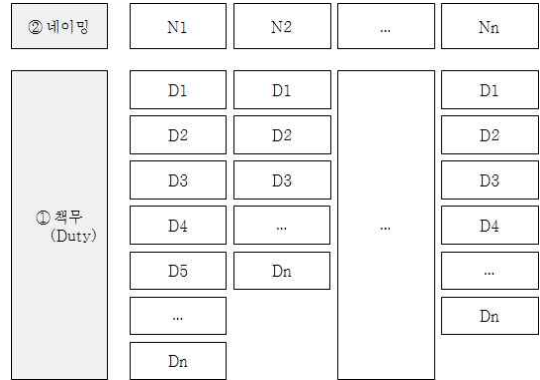


(그림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절차

3.1 DACUM 기법을 이용한 직무분석

경비분야의 4개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위하여 개발진은 우선 직무의 정의를 내리고, 각 직무의 책무(Duty)를 산업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도출하고, 각 책무(Duty) 별로 대표되는 네이밍을 작성하게 된다.

(그림 3)은 DACUM 기법을 통하여 ① 책무(Duty)인 Dn의 도출과 ② Nn의 네이밍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능력단위를 도출되는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DACUM 기법을 통한 능력단위 도출

직무의 정의, 책무(Duty) 도출, 네이밍 작성을 통하여 능력단위를 도출한 후 개발진은 능력단위요소를 다시 작성하고, 능력단위별 수준[3]을 제시하게 된다. (그림 4)는 ① 능력단위들을 바탕으로 ②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게 된다.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기준으로 각 능력단위의 ③ 수준을 낮은 순으로 레벨 1 수준에서 레벨 8 수준 중 해당 수준을 제시하게 된다.



(그림 4) 능력단위를 통한 능력단위요소 도출

3.2 능력단위 기술서

직무분석을 통해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준이 도출한 후 각 능력단위를 ‘~하는 능력이다’로 정의하고, <표 8>과 같이 능력단위요소 서식에 맞춰 능력단위요소별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기술하게 된다.

<표 8> 능력단위요소 서식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능력단위요소	1.1
	1.2
	1.3
	【지식】 ○ 【기술】 ○ 【태도】 ○
능력단위요소	1.1
	1.2
	1.3
	【지식】 ○ 【기술】 ○ 【태도】 ○

수행준거 작성은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게 된다. 또한 해당 능력단위요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는 능력단위 또는 능력단위요소에 부합하는 크기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4. 연구 결과

4.1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 도출

(그림 2)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절차에 따라 1·2·3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하여 직무의 정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및 수준을 <표 9>와 <표 10>과 같이 직무 정의와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였다.

<표 9> 직무 정의

보안은 특정한 고객의 재산·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위해를 예방 및 대응하는 일이다.

<표 9>의 직무 정의를 바탕으로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및 수준을 <표 10>과 같이 12개의 능력단위와 39개의 능력단위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능력단위 및 능력단위요소의 수준을 제시하였다. 수준은 통합된 4개의 업무를 고려하여 제시하였다.

<표 10> 능력단위별 능력단위요소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수준
경비계획(4)	1.경비진단하기	4
	2.경비계획수립하기	4
경비직무교육훈련(3)	1.직업예절교육훈련하기	3
	2.범죄예방방법교육훈련하기	3
	3.폭발물처리교육훈련하기	3
	4.사격술교육훈련하기	3
	5.체포호신술교육훈련하기	3
	6.정보보호보안교육훈련하기	3
	7.헌법교육훈련하기	3
	8.법학개론교육훈련하기	3
경비고객관계관리(5)	1.의뢰고객관계 관리하기	5
	2.고객요구 대응하기	5
경계방비(2)	1.경계활동하기	2
	2.방비활동하기	2
출입통제(2)	1.인력출입 통제하기	2
	2.차량화물출입 통제하기	2
질서유지(2)	1.혼잡상황 통제하기	2
	2.교통혼잡 통제하기	2
순찰활동(2)	1.순찰안전점검하기	2
	2.점검사항 조치하기	2
사건사고대처(2)	1.침입사고 대처하기	2
	2.화재사고 대처하기	2
	3.제난사고 대처하기	2
	4.형사사건 대처하기	2
	5.안전사고 대처하기	2
	6.강탈사건 대처하기	2

경비장비운용관리 (3)	1.보안장비 관리하기	3
	2.호송장비 관리하기	3
	3.방범시스템 설치관리하기	3
	4.총기조작운용하기	3
	5.분사기조작운용하기	3
보안관제(3)	1.신호영상 감시하기	3
	2.경보신호 대처하기	3
테러리즘대응(3)	1.테러사고 예방하기	3
	2.테러사고 대처하기	3
	3.사이버테러 대처하기	3
경비관련법규현장 적용(3)	1.경비업법규현장적용하기	3
	2.청원경찰법규현장적용하기	3
	3.형사법규현장적용하기	3

4.2 능력단위별 세부내용

4.2.1 경비계획

경비계획은 수행 예정인 경비업무와 관련한 경비진단 및 환경분석, 고객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각 분야별 경비업무수행 기준과 세부적인 행동지침을 수립하는 능력이다.

<표 11> 경비계획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경비진단 분석하기	1.1 관련 법규와 매뉴얼을 바탕으로 경비대상시설과 세부적인 경비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각종 환경요소를 조사할 수 있다. 1.2 관련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비업무에 관련한 고객의 주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1.3 관련 경비업무와 경비대상시설의 근무자들과의 인터뷰 및 자료요청을 통해 당해 시설 및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1.4 조사된 경비업무 및 경비대상시설의 환경요소와 고객요구사항을 관련된 지식과 분석기법에 따라 분석하여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도출할 수 있다. 1.5 분석된 환경요소와 고객요구사항을 구조화된 자료로 정리(categorization)할 수 있다. 1.6 정리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경비사정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경비요소를 확정할 수 있다.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조사분석기법 ○ 시설의 특성의 이해 ○ 위해요소의 유형 및 발생양태에 대한 이해 ○ 고객 요구사항의 특성의 이해 ○ 고객 요구사항의 조사분석법 ○ 위험분석기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경비)조사 능력 ○ 환경분석 능력 ○ 위험(Risk)예측분석 능력 ○ 시설진단 능력 ○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 ○ 정보가공(생산) 능력 ○ 인터넷자료 검색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한 객관적 태도 ○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태도 ○ 위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 태도 ○ 적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태도
경비계획 수립하기	2.1 관련법규와 경비진단분석 내용을 토대로 경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2.2 관련법규와 경비진단분석 내용, 고객요구사항, 그리고 경비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토대로 세부경비요소 및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2.3 작성된 세부경비요소 및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편성 및 인력동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4 작성된 세부경비요소 및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의 물적자원동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5 작성된 세부경비요소 및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6 작성된 세부경비계획안을 법규제약, 주어진 업무환경, 가용예산범위, 고객요구사항 등과 비교하여 경비사정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경비수행계획안을 복수로 작성할 수 있다. 2.7 복수로 작성된 세부경비수행계획안 중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1개의 최적안을 선택할 수 있다.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관련법규 ○ 경비진단 및 분석 ○ 경비사정평가 방법 ○ 고객관계관리 ○ 각 분야별 경비수행방법 ○ 인력운용관리 ○ 경비장비운용관리 ○ 경비예산운용관리 ○ 경비위해요소 ○ 경비대상시설의 특성(환경, 구조, 용도)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관련법규적용능력 ○ 경비진단 및 분석 능력 ○ 경비위해분석 능력 ○ 경비사정평가 능력 ○ 고객관계관리 능력 ○ 각 분야별 경비수행 능력 ○ 인력운용관리 능력 ○ 경비장비운용관리 능력 ○ 경비예산운용관리 능력 ○ 유관기관협력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상에 대한 치밀한 분석태도 ○ 환경요소에 대한 종합적 분석시각 ○ 대립요소에 대한 객관적 인식태도 ○ 사안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접근시각
--	--

4.2.2 경비직무교육훈련

경비직무교육훈련이란 경비원 및 경비업무관련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업윤리, 예절지식, 범죄예방방법, 폭발물처리지식, 사격술, 헌법 및 법학개론 등의 전문직무교육훈련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표 12> 경비직무교육훈련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직업윤리에 절교육하기	<p>1.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직업윤리에절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1.2. 경비환경과 각각의 업무상황에 부합하는 경비원의 정신자세, 기본근무자세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1.3. 경비환경과 업무상황에 맞는 표정연출법과 언어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다.</p> <p>1.4. 경비환경과 업무상황에 맞는 몸짓과 행동방식을 교육할 수 있다.</p> <p>1.5. 경비환경과 업무상황에 맞는 이미지메이킹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윤리에 대한 이해 ○ 예절법의 이해 ○ 교수법의 이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교수법 ○ 예절법 ○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려는 적극적 태도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범죄예방법 교육하기	<p>2.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범죄예방방법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2.2. 현대사회의 범죄의 유형과 특성, 발생 추세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2.3. 각 기관단위별 범죄예방활동의 유형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2.4. 경비현장별, 유형별, 상황별 범죄신고요령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2.5. 경비현장별, 유형별, 상황별 범죄현장보조요령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2.6. 출입관리요령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2.7. 순찰요령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에 대한 지식 ○ 각 기관단위별 범죄예방활동의 유형 ○ 범죄신고방법 ○ 출입관리방법 ○ 순찰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신고 능력 ○ 출입관리 능력 ○ 순찰업무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려는 적극적 태도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폭발물처리 교육하기	<p>3.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폭발물처리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3.2. 폭발물의 유형과 특성, 피해범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3. 폭발물 발견시 관련기관신고, 내부 상황전파요령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4. 폭발물 발견시 현장통제, 거주자, 고객대피요령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3.5. 관련기관에 의한 폭발물 처리 후 안 내공지, 현장정리요령 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의 특성 ○ 폭발물의 유형 ○ 폭발물의 피해범위 ○ 상황별 대응방법 ○ 현장 출입통제 ○ 관련기관 신고요령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물 대응능력 ○ 현장 출입통제능력 ○ 관련기관 신고능력 ○ 내부상황전파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 다양한 지식을 학습하려는 적극적 태도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사격술교육 훈련하기	<p>4.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사격술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4.2 총기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4.3 총기의 안전수칙, 조준법, 호흡법, 격발법, 추적예언, 심적동요방지 등에 대한 요령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다.</p> <p>4.4 사격술은 권총사격술과 소총사격술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격시 고려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4.5 권총사격술의 경우 웨버사격술, 서서좌, 앉아좌 자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p> <p>4.6 소총의 경우 얼드러좌, 앉아좌, 무릎좌, 쪼그려좌, 서서좌, 전진문의탁 등 사격자세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p>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의 유형과 특성 ○ 총기별 사격방법 ○ 총기별 사격연습방법 ○ 총기별 사격자세 ○ 총기안전수칙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기별 사격능력 ○ 총기별 사격연습 능력 ○ 총기별 사격자세 ○ 총기안전수칙 준수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 안전수칙준수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체포호신술 훈련하기	<p>5.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체포호신술훈련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5.2 체포호신술의 기본원칙과 활용원리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p> <p>5.3 기초호신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5.4 체포제압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신술 ○ 체포술 ○ 기초체력훈련법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신술 활용능력 ○ 체포술 활용능력 ○ 기초체력훈련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로서의 자신감 있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장 안전수칙준수 ○ 다양한 피교육자의 성향을 이해하려는 융통성 있는 태도
정보보호보안 교육하기	<p>6.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경비직무교육훈련계획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보안관리를 위한 절차와 매뉴얼 등을 만들 수 있다.</p> <p>6.2 정보기술발전의 특성과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p> <p>6.3 정보보호, 보안관리를 위한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정보보호, 보안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6.4 정보침해범죄의 대표적 유형인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6.5 각 범죄유형별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6.6 각 상황별 범죄에 대한 대응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p>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발전 ○ 정보보호대상 ○ 사이버범죄 ○ 정보범죄에 대한 대처요령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범죄대처 능력 ○ 정보침해대처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밀하고 냉철한 자세 ○ 신속정확하게 대처하는 자세
헌법 교육하기	<p>7.1. 경비계획서에 따라 헌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7.2 헌법상 헌법관련 일반이론과 총론에 관한 제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7.3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제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7.4 헌법상 통치구조론에 관한 제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7.5 헌법의 이해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p> <p>【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이론, 기본권, 통치구조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 교수법 ○ 경비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강의 능력 ○ 평가 능력 <p>【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적극적 자세
법학개론 교육하기	<p>8.1. 경비계획서에 따라 법학개론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8.2. 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3. 헌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p>

	<p>8.4. 형사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5. 민사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6. 행정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7. 상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8. 사회법의 일반개념에 대해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8.9. 법학개론의 일반지식에 대한 이해와 현장적용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학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 교수법 ○ 경비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강의 능력 ○ 평가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에 대한 적극적 자세
--	--

4.2.3 경비고객관계관리

경비고객관계관리란 경비업무의 의뢰자 및 도급인, 그리고 경비업무에 관련된 제반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이들 고객과의 지속적인 업무관계를 유지·관리하는 능력이다.

<표 13> 경비고객관계관리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업무고객 관리하기	<p>1.1 제안요청서나 직접적인 면담 등을 통해 경비업무의뢰고객 또는 도급인의 업무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p> <p>1.2 경비업무의뢰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규상의 법적인 제약요소를 확인하고, 요구사항의 이행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p> <p>1.3 경비업무의뢰고객의 불특정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p> <p>1.4 고객과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업무회의를 통해 경비업무진행사항을 경비업무상의 문제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p> <p>1.5 경비업무수행에 관한 문제발생시 고객과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p> <p>1.6 경비업무의뢰 고객에 수시 및 정기보고를 할 수 있다.</p>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기법 ○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방법 ○ 문제해결방법 ○ 고객관계관리기법 ○ 회의 및 보고기법 ○ 불만처리기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 및 분석능력 ○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능력 ○ 고객관계관리능력 ○ 회의 및 보고수행능력 ○ 불만처리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지향적 태도 ○ 고객에 대한 적절한 언어 사용 준수 ○ 고객에 대한 만족스런 서비스 준수
	<p>2.1 사전에 상주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p> <p>2.2 사전에 방문고객의 주요 요구사항의 유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별 대응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p> <p>2.3 고객의 요구사항을 경비업무 관련요구사항과 일반요구사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처리기준과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p> <p>2.4 고객요구사항의 대응절차를 참고로 하여 고객요구사항을 경비업무관련 요구사항과 일반요구사항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처리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p> <p>2.5 고객의 요구사항이 불만사항인 경우 일반적인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2.6 경비업무 관련 요구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급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p> <p>2.7 고객요구사항이 경비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 요구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나 담당자에게 연계할 수 있다.</p> <p>2.8 고객요구사항의 처리과정과 결과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2.9 고객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기법 ○ 방문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기법 ○ 불만고객의 욕구파악 및 분석기법 ○ 고객상담에 관한 지식 ○ 관련 법규 ○ 경비업무의 범위에 대한 지식 ○ 고객불만처리 방법 ○ 해당 경비시설의 업무특성 ○ 해당 경비시설의 조직구조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성격에 대한 판단능력 ○ 고객 불만처리능력

고객요구사항 대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및 대화기술 【태도】 ○ 고객지향적 태도 ○ 친절하고 절제된 태도 ○ 고객에 대한 책임감 있는 태도 ○ 불만고객에 대한 인내심 있는 자세

4.2.4 경계방비

경계방비란 경비대상시설 또는 경비구역에 대한 침입 및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력이나 침입감지센서, CCTV 등의 기계경비시스템, 그리고 철조망, 차폐물, 방범펜스, 조명 등의 설비를 통해 침입을 감시하고 방지하는 능력이다.

<표 14> 경계방비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경계활동 하기	<p>1.1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경비대상시설이나 경비구역의 중점경계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p> <p>1.2 중점경계요소는 인적경계요소와 물적경계요소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미리 각 요소별 경계요소를 확인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p> <p>1.3 경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 간의 책임분장과 책임구역을 명확히 설정하되, 책임구역은 상호 중복되게 설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p> <p>1.4 경비초소운용 시 적의선 관측장비나 통신장비 등을 운용할 수 있다.</p> <p>1.5 순찰팀이나 출입통제팀과의 협력활동을 할 수 있다.</p> <p>1.6 경계활동 중 경비구역내에서 의심자를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문 후 상급자나 관련기관에 신속히 보고 및 신고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p> <p>1.7 경계활동 중 화재나 재난상황을 발견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보고 및 신고조치한 후 현장확인, 조동조치, 상황전파, 대피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8 경계활동 중 예기치 못한 공격이나 침입행위가 인지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 조치 후 상급자나 관련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p> <p>1.9 경계활동 중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지에 기록하여 정리한 후 다음 근무자에 인계할 수 있다.</p>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업무수행요령 ○ 감시장비 및 통신장비사용요령 ○ 보고 및 신고요령 ○ 질문요령 ○ 현장확인 방법 ○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 방법 【기술】 ○ 경계업무수행능력 ○ 감시장비 및 통신장비사용능력 ○ 보고 및 신고 수행능력 ○ 의심자 질문수행능력 ○ 현장확인 수행능력 ○ 상황전파 및 대피유도 능력 【태도】 ○ 냉철한 판단력 ○ 객관적인 업무수행 태도 ○ 전문직업인적 태도 	
방비(防備) 활동하기	<p>2.1 경비계획에 따라 경비대상시설이나 경비구역의 중점경계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p> <p>2.2 중점경계요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인적경계요소와 물적경계요소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방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p> <p>2.3 중점경계요소 중 시각적인 감시를 요하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2.4 중점경계요소 중 시각적인 감시가 어렵거나 정밀한 침입감지를 요하는 장소에는 침입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2.5 경비시설이나 구역의 어두운 지역이나 사각지대에는 보안등이나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2.6 경비대상시설의 정문이나 차량출입구 등 차량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침입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바리케이드와 같은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2.7 경비대상시설이나 구역의 외곽지역에는 철조망이나 펜스, 담 등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2.8 경비대상시설의 창문이나 허수구, 옥상출입문 등과 같은 외부로 부터의 침입이 가능한 지역에는 방범펜스나 시건장치 등의 침입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p> <p>2.9 설치된 침입방지 또는 방호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p>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무의 이해 ○ 경비진단에 대한 지식 ○ 위해요소분석기법 ○ 경계업무 ○ 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한 지식 ○ 바리케이드, 철조망, 펜스 등 방호장비에

	대한 지식 【기 술】 ○ 경비업무의 이해능력 ○ 경비진단 수행능력 ○ 위해요소분석능력 ○ 경계업무 이해능력 ○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및 유지능력 ○ 바리케이드, 철조망, 펜스 등 방호장비 설치 및 유지능력 【태 도】 ○ 냉철한 판단력 ○ 객관적인 업무수행 태도 ○ 전문직업인적 태도
--	---

4.2.5 출입통제

출입통제란 설정된 경비구역에 대한 인력, 차량, 물건, 정보 등의 출입통제를 통해 발생 가능한 각종 위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위해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경비대상시설의 재산적 이익과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능력이다.

<표 15> 출입통제 세부내용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인력출입 통제하기	1.1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 그리고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당일 출입인력의 통제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1.2 상주고객의 경우 출입증이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주고객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3 상주고객의 경우 출입증 미패용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주고객여부를 확인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4 방문고객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문목적과 소속,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한 후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1.5 방문고객이 방문목적이 불명확한 경우는 해당 부서와의 직접연락을 통해 확인한 후 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6 우편, 택배 등 업무적인 방문객인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여부를 처리할 수 있다. 1.7 상주 VIP 및 방문 VIP, 임원 등의 고객인 경우 정해진 의전절차에 따라 의전을 실시할 수 있다. 1.8 모든 출입인력이 휴대한 휴대물품의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9 출입통제업무 시 출입자와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즉각 상급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10 출입통제 업무 시 발생한 이상여부는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
차량화물출입 통제하기	【지 식】 ○ 출입고객의 유형 및 성향에 대한 이해 ○ 고객행태에 대한 지식 ○ 고객심리에 대한 이해 ○ 비표운용요령 ○ 검색장비의 운용요령 ○ 질문검색요령 ○ 의전업무의 이해 【기 술】 ○ 출입고객의 유형화 이해능력 ○ 고객심리 파악능력 ○ 고객행태 파악능력 ○ 비표운용능력 ○ 검색장비의 운용능력 ○ 질문검색능력 ○ 의전수행능력 ○ 경호후도능력 【태 도】 ○ 고객지향적 태도 ○ 친절한 태도 ○ 냉철한 판단력 ○ 객관적인 경비업무수행 태도
인력출입 통제하기	2.1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방문차량의 유형을 숙지할 수 있다. 2.2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을 토대로 사전에 방문차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해를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다. 2.3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상의 절차에 맞추어 차량을 검색할 수 있다. 2.4 차량에 적재된 물건은 차량과는 별도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2.5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상의 절차, 그리고 상관의 지시 따라 방문목적에 위배 되는 차량과 물건을 조치할 수 있다.
차량화물출입 통제하기	【지 식】 ○ 출입차량의 목적 및 유형에 대한 이해 ○ 차량관련 위해사례에 대한 지식 ○ 운전자에 대한 질문방법 ○ 차량용 비표운용지식 ○ 차량용 검색장비의 운용지식 ○ VIP차량의 의전에 대한 지식 【기 술】 ○ 출입차량의 목적 및 적재화물 파악능력 ○ 차량관련 위해대응능력 ○ 운전자에 대한 질문능력 ○ 차량용 비표운용능력 ○ 차량용 검색장비의 운용능력 ○ VIP차량의 의전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규 준수 ○ 성실하고 냉철한 자세 ○ 신속정확하게 대처하는 자세
--	---

4.2.6 질서유지

질서유지란 경비대상시설이나 구역 내에서 수행되는 행사 및 집회 등에서 군중 및 차량 등에 의해 야기되는 혼잡상황을 통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사고나 위해를 적절히 조치하는 능력이다.

<표 16> 질서유지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혼잡상황 통제하기	<p>1.1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의 성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p> <p>1.2 행사장의 혼잡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의거 중점통제요소를 설정하여 경비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p> <p>1.3 행사시작 전 미리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혼잡상황이나 분쟁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이에 따른 통제필요성, 그리고 행사참석자들이 따라야 할 행동지침들을 수차례에 걸쳐 미리 안내할 수 있다.</p> <p>1.4 행사 중 혼잡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어진 절차에 따라 혼란야기자 및 분쟁자들에 대한 제지 및 통제행위를 할 수 있다.</p> <p>1.5 행사 중 혼잡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폭력사범이나 무질서 현행범이 발생할 경우 주어진 절차 및 유관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압행위를 할 수 있다.</p> <p>1.6 행사장내 안전사고발생시 정해진 절차나 지시에 따라 안전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군중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킬 수 있다.</p> <p>1.7 행사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히 구호활동을 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의 성향에 대한 이해 ○ 혼잡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상황에 대한 이해 ○ 혼잡군중에 대한 경고방법

교통질서 유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지방법 ○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압방법 ○ 미아발생시 처리방법 ○ 각 상황별 안전사고 대응요령 ○ 환자 및 부상자발생시 응급처치방법 ○ 혼잡군중에 대한 안내방법 ○ 유관기관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및 연락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성격과 참석자의 성향 파악능력 ○ 혼잡상황시의 위해유형 파악능력 ○ 혼잡군중에 대한 경고수행능력 ○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지수행능력 ○ 혼잡군중 및 폭력군중에 대한 제압수행능력 ○ 미아발생시 처리능력 ○ 환자 및 부상자발생시 응급처치능력 ○ 혼잡군중에 대한 안내능력 ○ 유관기관 및 상급자에 대한 보고 및 연락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태도 ○ 투철한 직업의식 ○ 직업윤리의식 ○ 관련법규 준수능력
	<p>2.1 경비대상시설 또는 행사장에서 개척되는 행사의 성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p> <p>2.2 행사장내 출입차량의 목적 및 유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p> <p>2.3 차량운행 동선과 주차구역의 정확한 위치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p> <p>2.4 교통신호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유도할 수 있다.</p> <p>2.5 행사장내 차량사고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관기관에 신고하고, 긴급구호, 2차 사고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지 식】

- 교통질서에 대한 이해
- 교통질서 유도에 대한 필요성 이해
- 교통질서 유도 방법
- 차량사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지식

【기 술】

- 차량 유도 방법 적용능력
- 교통정리 능력
- 교통질서 유도 장비활용 능력
- 차량사고처리능력

【태 도】

- 안전수칙 준수
- 안전한 교통질서 유도를 위한 책임감
- 장비활용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 유지

4.2.7 순찰활동

순찰활동은 설정된 경비구역을 정해진 방법에 의해 순회하면서 범죄 및 안전사고 관련 위해요소를 조사·점검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순찰 중 발견한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능력이다.

<표 17> 순찰활동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순찰안전점검하기	1.1 사전에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숙지할 수 있다. 1.2 정해진 순찰계획에 따라 정선순찰, 요점순찰, 난선순찰 등 순찰방법에 따라 정해진 점검리스트 등을 이용하여 순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1.3 순찰활동 중 안전위해요소가 발견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하되, 신속히 상급자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4 순찰활동 중 침입자의 발견, 화재발생, 재난발생 등 우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지식】 ○ 순찰시 점검요소 및 방법 ○ 순찰방법 ○ 각 상황별 조치요령 ○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연락방법 ○ 거동수상자 발견 및 질문검색 요령 ○ 순찰장비에 대한 이해 ○ 경비구역내 각종시설특성 ○ 경비구역내 방법설비에 대한 지식 【기술】 ○ 요소별 안전점검능력 ○ 유형별 순찰수행능력 ○ 거동수상자 질문능력 ○ 각 상황별 우발상황 조치능력 ○ 경비장비 운용능력 ○ 방법설비운용능력 ○ 소화장비 운용능력 【태도】 ○ 치밀한 관찰력과 과감한 결단력 유지 ○ 민첩한 판단력 ○ 근무자세 및 용모 복장 단정 준수
	2.1 순찰활동 후 인지한 사실과 이상 징후, 이전상황과 다른 점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점검사항조치하기	는 순찰일지에 육하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2.2 순찰활동 중 발생한 우발상황을 즉각 조치한 경우 조치상황을 즉시 정해진 보고라인에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행할 수 있다. 2.3 순찰활동 후 인지한 사실과 조치내용은 교대근무자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다. 2.4 순찰활동 후 인지한 특이사항이나 즉응 조치사항에 대해 모든 근무자들과 함께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지식】 ○ 안전점검에 대한 이해 ○ 각 상황별 조치요령 ○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 연락방법 ○ 경비구역내 각종 시설특성에 대한 이해 ○ 방법시스템에 대한 이해 ○ 관련법규 【기술】 ○ 위해요소에 대한 조치능력 ○ 거동수상자 조치능력 ○ 각 상황별 우발상황 조치능력 ○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기술 ○ 조치사항의 설명능력 【태도】 ○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태도 ○ 객관적 사실 기록하는 자세 ○ 성실하고 원칙에 입각한 태도

4.2.8 사건사고대처

사건사고대처란 경비대상시설에서 발생한 침입, 화재, 재난, 형사사건, 안전사고, 강탈사건 등에 대한 조동조치, 현장통제, 현장보존, 신고 및 연락 등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표 18> 사건사고대처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침입사고대처하기	1.1 침입사고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경찰기관에 신고한 후 상급자에 보고할 수 있다. 1.2 경비구역내의 관련 침입현장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현장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1.3 현장 확인 중 침입자나 침입자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호루라기, 목소리, 기타 다양한 경보장치를 통해 경보를 발할 수 있다. 1.4 부득이 하게 침입자나 침입자로 의심되는 자와의 직접적인 대응을 하여야만 하는

	<p>경우 단봉, 분사기 등이나 기타 장비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대응시간을 지연시키고, 즉각적으로 경찰기관이나 다른 사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1.5 현장 확인 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허용된 응급처치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1.6 현장 확인 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된 우려가 농후한 경우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및 연락방법 ○ 상황별 현장보존방법 ○ 상황별 경보방법 ○ 상황별 침입자 대응방법 ○ 응급처치방법 ○ 체포연행술에 대한 기초지식 ○ 호신술에 대한 기초지식 ○ 유관기관 연락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및 연락수행능력 ○ 상황별 현장보존능력 ○ 상황별 경보발령능력 ○ 상황별 침입자 대응능력 ○ 응급처치능력 ○ 체포연행술 수행능력 ○ 호신술 수행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p>화재사고 대처하기</p>	<p>2.1 화재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소방관서, 자체소방서, 경찰기관, 상급자 등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p> <p>2.2 화재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히 화재상황을 파악한 후 소화기, 소화전을 활용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초동소화를 시행할 수 있다.</p> <p>2.3 초동소화 조치와 동시에 주변의 화재 매개물을 격리하고 차단하는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p> <p>2.4 초동소화조치를 시행하면서 자체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경비구역내의 구성원에게 대피경보를 전파할 수 있다.</p> <p>2.5 대피경보와 더불어 초동소화조치를 포기하고 신속히 경비구역내 구성원의 대피요도를 시행할 수 있다.</p> <p>2.6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응급처치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2.7 현장 확인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된 우려가 농후한 경우 소방기관,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유형별 특성의 이해 ○ 화재신고절차 ○ 화재 시 상황전파에 대한 지식 ○ 소화장비 사용법 ○ 화재현장 대피유도방법 ○ 화상환자 및 안전사고 환자 응급처치방법 ○ 화재감지장비에 대한 이해 ○ 전기설비에 대한 이해 ○ 화재매개물질에 대한 이해 ○ 화재의 원인물질에 대한 이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신고 수행능력 ○ 화재 시 상황전파능력 ○ 소화장비 사용능력 ○ 화재현장 대피유도능력 ○ 화재유형별 특성 파악능력 ○ 화상환자 및 안전사고 환자 응급처치능력 ○ 전기설비의 기초적 조작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p>재난사고 대처하기</p>	<p>3.1 경비계획상 해당 경비시설이나 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재난대응절차와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다.</p> <p>3.2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재난가능성이 있는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3.3 지진, 건물붕괴, 화재, 풍수해, 테러, 가스유출, 기타 등 재난상황에 발생되면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후 건물 및 시설 구역내 관련자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p> <p>3.4 재난상황에 발생되면 신속히 현황 파악한 후 정확한 상황을 정해진 보고라인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p> <p>3.5 상황별 재난발생시 긴급히 구조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조행위를 할 수 있다.</p> <p>3.6 상황별 재난발생시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p> <p>3.7 상황별 재난발생시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의 재난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유형별 재난상황의 특성 이해 ○ 지진발생시 대응법 ○ 건물붕괴시 대응법 ○ 화재발생시 대응법 ○ 풍수해 발생시 대응법 ○ 테러 발생시 대응법 ○ 가스유출시 대응법 ○ 정전사고 발생시 대응법 ○ 재난상황에 활용되는 장비사용에 대한 이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재난상황의 특성 이해능력 ○ 지진발생시 초동대응능력 ○ 건물붕괴시 초동대응능력 ○ 화재발생시 초동대응능력 ○ 풍수해 발생시 초동대응능력 ○ 테러 발생시 초동대응능력 ○ 가스유출시 초동대응능력 ○ 정전사고 발생시 초동대응능력 ○ 각 재난상황에 활용되는 장비사용능력 ○ 비상연락기술 ○ 상황전파기술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상황 대응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 신속·정확하게 대응하는 자세 ○ 상호 업무적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유지
<p>형사사건 대처하기</p>	<p>4.1 경비계획과 대응메뉴얼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형사사건 이 발생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즉시 경찰기관과 상급자에 신고 및 연락을 할 수 있다.</p> <p>4.2 경비구역 내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현장을 보존할 수 있다.</p> <p>4.3 경찰 및 관련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이 훼손 및 멸실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에는 경찰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사진촬영, 현장물건의 이동, 기타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4.4 형사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찰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호조치나 응급처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 살인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지식 ○ 강도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지식 ○ 성범죄에 관한 초동조치지식 ○ 절도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지식 ○ 재물손괴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지식 ○ 변사사건 등에 관한 초동조치지식 ○ 기타 형사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지식 ○ 형사사건의 현장보존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 현장통제에 관한 지식 ○ 경찰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연락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사건 관련 법규 이해능력 ○ 살인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능력 ○ 강도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능력 ○ 성범죄에 관한 초동조치능력 ○ 절도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능력 ○ 재물손괴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능력 ○ 변사사건 등에 관한 초동조치능력 ○ 기타 형사사건에 대한 초동조치능력 ○ 형사사건의 현장보존능력 ○ 응급처치능력 ○ 현장통제능력 ○ 경찰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 연락방법 수행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p>안전사고 대처하기</p>	<p>5.1 경비계획과 대응메뉴얼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절차를 확인한다.</p> <p>5.2 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 출입문 끼임사고, 주차장 차량사고, 설비와의 충돌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상급자나 관련기관에 보고 및 신고할 수 있다.</p> <p>5.3 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히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와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p> <p>5.4 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을 위한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5.5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후 상황진술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 출입문 끼임사고, 주차장 차량사고, 설비와의 충돌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 ○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 관련 지식 ○ 유관기관 연락방법 ○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관련 법규 이해능력 ○ 각 상황별 안전사고 처리능력 ○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 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처치능력 【태 도】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p>6.1 경비계획과 대응메뉴얼에 따라 호송경비 구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강탈사고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p> <p>6.2 호송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엘리베이터 간힘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 출입문 끼임사고, 주차장 차량사고, 설비와의 충돌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상급자나 관련 기관에 보고 및 신고할 수 있다.</p> <p>6.3 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긴급히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와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다.</p> <p>6.4 경비구역 내에서 구성원 또는 방문고객의 안전사고 발생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을 위한 사진 촬영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6.5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 후 상황진술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p>
강탈사고 대처하기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 엘리베이터 간힘사고,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 출입문 끼임사고, 주차장 차량사고, 설비와의 충돌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지식 ○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 관련 지식 ○ 유관기관 연락방법 ○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관련 법규 이해능력 ○ 각 상황별 안전사고 처리능력 ○ 상황진술이나 현장확인 수행능력 ○ 응급처치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4.2.9 경비장비운용관리

경비장비운용관리란 경비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보안장비, 호송장비, 방법시스템 등에 대한 구매, 설치, 유지보수 등의 유지관리와 안전한 총기, 분사기 사용을 위한 운용교육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표 19> 경비장비운용관리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p>1.1 관련법규와 업무의뢰자의 요구사항, 경비계획서, 관련메뉴얼 등을 토대로 하여 경비장비 소요요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p> <p>1.2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관련메뉴얼 등을 토대로 경비대상시설에 대해 요구되는 보안장비를 설치·배치할 수 있다.</p> <p>1.3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관련메뉴얼 등을 토대로 관련자에 대해 장비의 설치, 점검, 유지관리, 작동법 등에 대한 설명과 교육을 할 수 있다.</p> <p>1.4 관련 법규와 경비계획서를 토대로 각 장비의 유형에 따른 점검리스트를 만들고 각 보안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여부와 유지상태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p> <p>1.5 보안장비의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p>
보안장비 관리하기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법규 ○ 총기운용 및 관리방법 ○ 분사기운용 및 관리방법 ○ 경적, 단봉,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착용장비에 관한 지식 ○ 기동장비(출동차량, 세그웨이(segway), 오토바이 등)에 관한 지식 ○ 경비원 복제에 관한 지식 ○ 급속탐지기(문형, 휴대용, 봉형 등) 등 검색장비 운용 및 유지에 관한 지식 ○ X-ray 검색기에 대한 지식 ○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지식 ○ 야시경 등 감시장비에 대한 지식 ○ 거짓말탐지기에 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적, 단봉,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착용장비 운용 및 관리능력 ○ 기동장비 운용 및 관리능력 ○ 경비원 복제 착용 및 관리능력 ○ 검색장비 운용 및 유지 능력 ○ 급속탐지기(문형, 휴대용, 봉형 등) 운용 능력 ○ X-ray 검색기 운용능력 ○ 열화상카메라 운용능력 ○ 야시경 운용능력 ○ 거짓말탐지기 운용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및 규칙 준수 ○ 객관적이고 원칙 있는 자세
호송경비장비 관리하기	<p>2.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 그리고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호송경비장비관리를 위한 일일, 주간, 월간점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p> <p>2.2 관련 법규상의 규정과 호송경비계획을</p>

	<p>토대로 각 장비의 유형별 점검리스트에 따라 장비의 작동여부와 유지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2.3 장비의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련 법규 ○ 호송차량에 관한 지식 ○ 현금호송백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규 이해능력 ○ 호송차량 운용 및 관리능력 ○ 현금 호송백 운용 및 관리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 및 규칙 준수 ○ 객관적이고 원칙 있는 자세
<p>방법시스템 설치관리하기</p>	<p>3.1 관련법규와 업무의뢰자의 요구사항, 경비계획서에 따라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방법시스템설치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다.</p> <p>3.2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방법시스템설치 후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평가할 수 있다.</p> <p>3.3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설치 후 업무의뢰자에게 법규에서 정한 설명의무사항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할 수 있다.</p> <p>3.4 경비계획과 일일근무계획에 따라 방법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별 일일, 주간, 월간점검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p> <p>3.5 관련 법규상의 규정과 각 시스템의 유형별 점검리스트에 따라 방법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와 유지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p> <p>3.6 방법시스템의 점검 후 문제가 발견된 부분은 수리 및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p> <p>3.7 점검 및 확인 결과 반복적인 오경보 또는 오작동일 경우 원인을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한 이해 ○ 감지센서에 대한 이해 ○ 컨트롤러에 대한 이해 ○ 송·수신장치(통신시스템)에 대한 이해 ○ CCTV 등 영상장비에 대한 이해 ○ 기록저장장치에 대한 이해 ○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이해 ○ 방법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 ○ 방법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진단에 대한 이해 ○ 경비업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 오경보 등에 관한 이해 ○ 장애발생원인과 조치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에 대한 적용

	<p>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센서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컨트롤러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송·수신장치(통신시스템)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CCTV 등 영상장비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기록저장장치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출입통제시스템의 이해 및 설치·관리능력 ○ 방법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능력 ○ 방법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진단능력 ○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능력 ○ 오경보 등에 관한 이해능력 ○ 장애발생원인과 조치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의 장애 예방 활동 노력 ○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 ○ 고객과의 신뢰 형성 노력
<p>총기조작운용하기</p>	<p>4.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총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작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4.2 특수경비원에 대한 지급총기인 권총과 소총에 대한 제원과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p> <p>4.3 권총과 소총에 대한 안전수칙과 분해검사, 청소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총에 대한 제원과 특성 ○ 소총에 대한 제원과 특성 ○ 권총과 소총에 대한 분해조작요령 ○ 권총과 소총에 대한 검사조작요령 ○ 권총과 소총에 대한 청소요령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총과 소총에 대한 분해조작능력 ○ 권총과 소총에 대한 검사조작능력 ○ 권총과 소총에 대한 청소관리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규칙 준수 ○ 치밀한 관리점검 노력 ○ 관련 기록을 활용하려는 노력
<p>분사기조작운용하기</p>	<p>5.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분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작교육을 위한 절차와 교본 등을 만들 수 있다.</p> <p>5.2 경비원의 기본 지급장구인 분사기의 제원과 특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p> <p>5.3 분사기의 상황별 안전한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5.4 분사기의 안전한 보관과 점검관리에 대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기에 대한 제원과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기에 대한 조작요령 ○ 분사기에 대한 검사조작요령 ○ 분사기에 대한 청소요령 ○ 상황별 분사기 사용요령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사기에 대한 조작능력 ○ 분사기에 대한 검사조작능력 ○ 분사기에 대한 청소능력 ○ 상황별 분사기 사용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 규칙 준수 ○ 치밀한 관리점검 노력 ○ 관련 기록을 활용하려는 노력
--

4.2.10 보안관제

보안관제는 경비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시스템을 통해 송신되는 경보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수신된 경보신호를 출동요원에 전파하고, 현장에 출동한 출동요원이 경보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다.

<표 19> 경비장비운용관리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경보신호 관 제하기	<p>1.1 경비구역내 영상감시장비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영상감시구역을 파악할 수 있다.</p> <p>1.2 경비구역내 침입감지센서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감시구역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p> <p>1.3 경비구역내부와 주변 환경에 따른 오경보 가능성과 유형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p> <p>1.4 경비구역으로부터의 경보수신시 수신경보를 신속히 분석하여 출동요원에 전파할 수 있다.</p> <p>1.5 경비구역으로부터의 영상신호수신시 영상분석 후 신속히 출동요원에게 전파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관한 지식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방법 ○ 침입감지센서의 구조 및 특성 ○ 컨트롤러의 구성 및 특성 ○ 송·수신장치의 구성 및 특성 ○ CCTV의 구조 및 특성 ○ 경비구역의 구조와 주변환경의 특성 ○ 경보신호의 유형과 특성 ○ 영상신호의 유형과 특성 ○ 오경보에 관한 지식 ○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 경비구역 주변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

경보신호 대 응하기	<p>에 관한 지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신호의 분석에 관한 지식 ○ 영상신호의 분석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설계능력 ○ 침입감지센서의 활용능력 ○ 컨트롤러의 활용능력 ○ 송·수신장치의 활용능력 ○ CCTV의 설치 및 운용능력 ○ 경비구역의 구조와 주변환경 파악능력 ○ 경보신호의 분석능력 ○ 영상신호의 분석능력 ○ 오경보 관리 능력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규 준수 ○ 근무규정 및 지침 준수 ○ 상황전파 및 조치결과 기록 노력 <p>2.1 관제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내에 신속히 현장에 출동할 수 있다.</p> <p>2.2 현장출동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p> <p>2.3 현장출동 후 확인결과 오경보인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시센터 등 시스템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정상적인 상태로 세팅할 수 있다.</p> <p>2.4 현장출동 후 확인결과 외부침입인 경우 즉시 상황실과 경찰기관에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다.</p> <p>2.5 현장확인 또는 대응이 종료된 후 내·외부 점검 및 상황조치 결과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원리에 관한 지식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방법 ○ 침입감지센서의 구조 및 특성 ○ CCTV의 구조 및 특성 ○ 경비구역의 구조와 주변환경의 특성 ○ 경보신호의 유형과 특성 ○ 영상신호의 유형과 특성 ○ 오경보의 특성 및 조치요령 ○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 ○ 경비구역 주변의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에 관한 지식 ○ 범인체포술에 관한 지식 ○ 호신술에 대한 지식 ○ 경찰기관과의 협력방법 ○ 시설주에 대한 상황설명방법 ○ 관련 서류의 작성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 및 운용능력 ○ 침입감지센서의 활용능력 ○ CCTV의 활용능력 ○ 경비구역의 구조와 주변환경 파악능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보신호의 분석능력 ○ 영상신호의 분석능력 ○ 오경보 관리능력 ○ 방법시스템(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능력 ○ 경비구역의 내·외부 점검 능력 ○ 침입사고 대처능력 ○ 오경보 대처능력 ○ 오경보에 대한 설명능력 ○ 범인체포술 시행능력 ○ 호신술 시행능력 ○ 경찰기관과의 협력 ○ 시설주에 대한 상황설명 ○ 관련 서류의 작성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 노력 ○ 오경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 복장 및 출동장구류 착용기준 준수 ○ 고객과의 신뢰 형성 노력
--	---

4.2.11 테러리즘대응

테러리즘대응은 경비대상시설 구역내에서 발생 가능한 각 유형별 테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테러사고 발생 시 상황진파, 현장통제, 대피유도, 구호조치 등의 초동조치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표 20> 테러리즘대응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테러사고 예방하기	<p>1.1 관련법규와 경비계획에 따라 테러사고 예방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경비구역내의 출입자나 시설 등에 대한 확인·점검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p> <p>1.2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의 테러리즘 동향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비구역내의 출입자나 시설 등에 대한구체적인 중점 확인·점검요소를 설정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p> <p>1.3 일일경비계획과 중점확인·점검요소와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의심자와 의심요소에 대한 감시·점검활동을 할 수 있다.</p> <p>1.4 감시·점검활동 중 의심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유형 및 특성 ○ 상황별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 ○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유형 및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중 대피유도방법 ○ 현장통제방법 ○ 관련 기관 신고 및 연락방법 ○ 의심요소 확인·점검에 대한 이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유형 및 특성 이해능력 ○ 상황별, 유형별 테러리즘 대응능력 ○ 테러의심 현장 출입통제능력 ○ 테러의심 현장 군중 대피유도능력 ○ 관련 기관 신고 및 연락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테러사고 대처하기	<p>2.1 테러사고가 발생된 것을 인지한 경우 신속히 경찰기관, 국가정보원, 소방관서, 상급자 등 정해진 신고절차에 따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p> <p>2.2 테러현장의 테러유형이 확인되고 목격이 가능한 지점까지 접근이 가능한 경우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기관 및 상급자에 보고할 수 있다.</p> <p>2.3 경비구역내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심물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경우 신속히 현장의 접근을 통제하고 관련기관에 신고한다.</p> <p>2.4 테러유형이 폭발물에 의한 경우로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추가적인 폭발에 대비하여 다른 사람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p> <p>2.5 테러유형이 폭발물에 의한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구역내의 대피로를 확보하여 경비구역내의 구성원들의 대피유도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p>2.6 테러유형이 생화학무기에 의한 경우로 의심되는 경우 구비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신속히 현장을 봉쇄하고 상황을 전파한 후 경비구역내의 모든 구성원을 밖으로 대피하게 유도할 수 있다.</p> <p>2.7 현장상황이 인질극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다른 구성원들을 경비구역 밖으로 대피하게 유도할 수 있다.</p> <p>2.8 테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기관에 신고하고 화재소화의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2.9 테러에 의한 부상자나 응급환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급의료기관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벗어난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응급처치 범위내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p> <p>2.10 현장 확인시 부득이한 상황으로 증거자료나 현장이 멸실된 우려가 농후한 경우 소방기관, 경찰기관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자료나 현장보존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유형 및 특성 ○ 상황별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 ○ 테러현장 대피유도방법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방법 ○ 관련 기관 신고 및 연락방법 ○ 관련장비의 작동 및 운용방법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리즘의 유형 및 특성 이해능력 ○ 상황별, 유형별 테러리즘 대응능력 ○ 테러현장 대피유도능력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능력 ○ 관련 기관 신고 및 연락능력 ○ 현장출입통제능력 ○ 관련 장비의 운용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자세
<p>사이버테러 대처하기</p>	<p>3.1 관련 법규와 경비계획에 따라 사전에 방화벽(Firewall)이나 해킹방지프로그램 등의 해킹방지책을 강구할 수 있다.</p> <p>3.2 사이버테러의 주요수법 및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p> <p>1.3 해킹, DDos 등 사이버테러에 사용하는 주요수법의 시도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점검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p> <p>3.4 전산관련 인력이나 구성원의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원칙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p> <p>3.5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과 탐지, 그리고 대응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p> <p>3.6 사이버테러의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신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하에 탐지 및 대응행위를 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특성 ○ 상황별 사이버테러 유형에 대한 대응방법 ○ 관련 기관 신고 및 연락방법 ○ 사이버테러 수법의 확인점검방법 ○ 사이버테러의 예방교육에 관한 지식 ○ 컴퓨터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 컴퓨터네트워킹에 관한 지식 ○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 경비대상시설의 유형 및 특성 ○ 사이버테러 사고의 파급효과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테러의 유형 및 특성에 대한 이해능력 ○ 상황별 사이버테러 대응방법의 적용능력 ○ 사이버테러 수법의 확인점검 능력 ○ 사이버테러의 예방교육능력 ○ 컴퓨터프로그래밍 이해능력 ○ 컴퓨터네트워킹에 이해능력 ○ 보안프로그램에 이해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대상시설의 유형 및 특성 이해능력 ○ 사이버테러 사고의 파급효과 이해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 자세 ○ 책임감 ○ 냉정하고 침착한 전문가적 자세
--	--

4.2.12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은 경비원 및 경비업무관련자가 경비직무를 수행하는데 기초가 되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 형사법, 기타 경비관련법규를 현장상황에 맞게 교육하고, 그 현장 이행을 지도·감독하는 능력이다.

<표 21> 경비관련법규 현장적용 세부내용

능력단위 요소	수행준거
경비업법 현장적용하기	<p>1.1 경비계획서에 따라 경비업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1.2 경비업의 정의와 직무의 성격에 관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1.3 경비업의 허가 및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1.4 기계경비업무와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5 경비지도사, 경비원과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6 경비업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7 경비협회와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8 보칙과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9 벌칙과 과태료와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1.10 경비계획서에 따라 경비업법의 현장사례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법 지식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 교수법 ○ 경비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 현장사례교육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육수행 능력 ○ 평가능력 ○ 사례연구 및 교육활용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적용 중심교육 ○ 법규이행준수

청원경찰법 현장적용하 기	<p>2.1 경비계획서에 따라 청원경찰법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2.2 청원경찰의 정의와 직무의 성격에 관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2.3 청원경찰 인사관리와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2.4 청원경찰의 직무수행, 감독, 근무방법 등과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2.5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에 관련한 제 규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교육할 수 있다.</p> <p>2.6 경비계획서에 따라 청원경찰법의 현장사례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원경찰법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 교수법 ○ 경비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 현장사례교육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수수행 능력 ○ 평가능력 ○ 사례연구 및 교육활용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적용 중심교육 ○ 법규이행준수
형사법 현장 적용하기	<p>3.1 경비계획서에 따라 형사법 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3.2 형법상의 기초개념과 원칙, 정의에 관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3 범죄개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범죄의 특수형태, 죄수론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4 형벌의 개념, 특별예방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5 범죄의 종류와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6 형사소송법의 목적, 개념, 종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7 형사소송의 의의와 원칙 등과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8 수사와 공소에 관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9 공판절차와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10 상소와 비상구제절차와 관련한 제 규정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다.</p> <p>3.11 경비계획서에 따라 형사법의 현장 사례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p> <p>【지 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법 ○ 교육훈련에 관한 지식 ○ 교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비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 현장사례교육에 관한 지식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교수수행 능력 ○ 평가능력 ○ 사례연구 및 교육활용 능력 <p>【태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적용 중심교육 ○ 법규이행준수

5. 산업현장 검증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비분야 개발 결과에 대하여 관련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내용의 산업현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총 38개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22> 업무별 조사대상

구 분	업 무	업 체 수
업무별	시설 경비	18
	호송 경비	6
	기계 경비	6
	특수 경비	8
총 계		38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남, 충북, 광주전남북, 부산경남으로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23> 지역별 조사대상

구 분	지 역	업 체 수
지역별	서울	10
	경기	4
	인천	4
	강원	4
	대구경북	3
	대전충남	3
	충북	3

	광주전남북	3
	부산경남	4
총 계		38

산업현장 검증은 5점 척도로 각 사업장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으로는 개발 결과인 능력단위 구성, 직무정의,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에 대한 내용이다. 산업현장 검증 결과 <표 24>와 같이 전체 평균 4.67로 적합성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4> 산업현장 검증 결과

구 분	세 부 내 용	업체 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직무 구조	능력단위 구성	38	4.68	0.47
	직무정의		4.58	0.50
직무 및 능력 단위	능력단위 정의		4.55	0.50
	능력단위		4.57	0.48
능력 단위 요소	능력단위요소		4.74	0.45
	수행준거		4.50	0.51
	지식		4.76	0.43
	기술		4.63	0.49
	태도		5.00	0.00
전 체 평 균			4.67	0.48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비분야의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공학 차원에서 DACUM 기법을 이용하여 경비분야 교육과정 개발을 하였다. 경비분야의 경우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특수경비의 4개 업무를 통합하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각 업무별 산업현장 전문가 7명, 교육훈련 전문가 3명, 자격 전문가 1명, 직무분석 전문가 1명, 연구진 2명으로 총 14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워크숍 6번과 검토회의 3번을 거쳐 능

력단위 12개, 능력단위요소 39개를 도출하였고, 각 능력단위별 수행준거 및 지식·기술·태도를 작성하여 이론과 실무를 유효적절하게 배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에 대한 산업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산업현장 검증은 5점 척도로 각 사업장에서 직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 내용으로는 개발 결과인 능력단위 구성, 직무정의, 능력단위 정의,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지식·기술·태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다. 산업현장 검증 결과 전체 평균 4.67로 적합성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경비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현장적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로 개발된 경비분야의 교육과정 개발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하였는데, 개발 결과 분류체계에 의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였다. 우선 경비업법에 명시된 5개 업무 중 신변보호 업무를 제외한 4개 업무를 경비로 통합하여, 각 업무별로 도출되어야 할 능력단위가 통합되어 업무별 고유 직무를 도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호송경비와 기계경비의 경우 능력단위요소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향후 자격 개발에 있어 능력단위 부족으로 인하여 각 업무별 자격개발에서도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또한 대분류 상에서 11. 경비·청소로 분류된 것은 경비·경호분야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에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과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한국산업분류에서 경비·경호분야 분야의 세분류로 보안시스템 서비스업과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현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경비·경호분야 세분류인 경비를 보안으로 직무변경 및 보안시스템 서비스업과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을 포함한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자격기본법 법률 제11722호
- [2] 한국산업인력공단, '14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사업공고, 2014.
- [3]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및 활용패키지 개발매뉴얼, 2014.
- [4]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 체계, 2014.
- [5]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2014.
- [6] 노동조, "기술정보검색사의 직무분석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15, No.1, pp.177-191, 2004.
- [7] Norton, R. E. & Moser, J., "DACUM Handbook (3rd ed.)", OH: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2008.
- [8] Moser, J. & Norton, R. E., "Brief History of DACUM: DACUM workshop handout note", OH: Center 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Employment, 2010.
- [9] Harris, J., "The Use of the DACUM Process for Curriculum and Training Program Development", MI: Society of Manufacturing Engineers Conference, 1988.
- [10] King, S. L., "The DACUM Process and its usefulness in Task analysis of Instructional Developers, 1999.
- [11] 유지선 외, "DACUM을 이용한 전문대 비서관련 학과 교과과정모형 개발", 비서관론총, Vol.9, No. 2, pp.93-115, 2000.

[저자소개]



김민수 (Min-Su Kim)

2004년 컴퓨터공학사
2012년 경호안전학석사
2015년 산업보안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외래강사

email : fortcom@hanmail.net



김종민 (Jong-Min Kim)

2015년 산업보안학박사
현재 경기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외래강사

email : dyuo1004@gmail.com